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적정한 대가 지불 의무화 〉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1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적정한 대가 지불 의무화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14.

다. 회부연월일 : 2025. 5.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적정한 대가 지불 의무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시장에서의 일부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기반으로 한 불공정한 요구에 해당함.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시장 실패를 개선하여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 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제50조(금지 행위) ① ----- --제6호의2의 경우에는 제22조의 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제9호부터-----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u><신설></u> 7. ~ 11. (생략) ②·③ (생략)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u> 7.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에 같은 법 제22조71)에 따른 넷플릭스, 구글, 네이버 등 대형 CP2)(서비스안전성의무사업자3))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CP)
- 3)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른 서비스안전성 의무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함. 현재 기준으로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총 5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제50조제1항제6호의2)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내용의 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데 많은 자본을 투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형 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간의 정보통신망 거래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며, 대형 CP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당하지 않은 대가 지불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국외의 대형 콘텐츠 제공자(CP)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불 구조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동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CP들도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겪는 부담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부가통신사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인터넷 접속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개인이나 기업,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KT, SKB, LGU+)임.

- 또한, 동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발되는 트래픽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전기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한 추가적인 망 확충과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망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됨.

○ 다만, 동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해당 금지행위 위반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⁵⁾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예정되어 있음.

5)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며, 어떤 경우에 위반으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대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대상으로 협상력이 높은 주요 사업자에 한정하여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서비스안정성의무사업자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또한, 동 개정안의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부분(적정한 대가 요구 부분)은 정보통신망의 이용방식 및 조건⁶⁾이 다양하여, 정부가 개별 망 이용계약의 적정한 대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법무부는 사업자 간 역차별 등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정보통신망을 제공’의 의미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단순히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 대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까지 처벌대상

6)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비슷한 트래픽 점유율을 보이는 부가통신사업자라도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특정 시간에 사용량이 편중되거나, 망의 품질 유지(QOS)를 요구하는 등 부가적인 계약조건에 따른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에 포함될 경우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동 개정안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임.

- 구체적으로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에 망을 직접 연결(peering)하는 경우, 글로벌 CP는 ISP의 ‘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 ISP는 자사의 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자사의 이용자들에게 해당 이용자들이 요청한 CP의 콘텐츠를 전송할 뿐, 트랜짓(transit)의 경우와 같이 CP에서 자사의 망으로 CP의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연결(peering)은 상호무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동 개정안은 기업의 계약 체결과 내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는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가 있으며, 국내 ISP와 CP의 관계에서는 이미 ISP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국내 ISP의 우월한 지위를 더욱 공고히 만들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국내 인터넷망이 정당한 거래 질서 하에 ICT 이용자의 편익을 지속 증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형 CP와의 망 이용 대가 거래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은 있으나, 이용대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소관 부처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기준 논의 필요 등과 이해관계자의 사적 계약의 자유 침해 가능성, 특정 사업자에게 부담 과중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문 의 처
02)6788-5225